

평창군의회사무과의 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3
----------	----

제출년월일 : 1998. 12. 21.

제출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 제호를 평창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변경하고
집행기관의 계제 폐지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의 계제를 폐지하며,
전문위원도 조례에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의 목적(안 제1조)
- 나. 사무과의 설치규정(안 제2조)
- 다. 사무과장을 두도록 하고 임무를 규정(안 제3조)
- 라. 전문위원의 두고 역할을 규정함.(안제4조)
- 마. 사무직원의 정원은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함.
(안 제5조)
- 바. 사무과의 사무분장등은 평창군규칙으로 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관계부처승인: 표준안
- 라. 입법예고 : 해당없음
- 마.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평창군조례 제 호

평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평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 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과의 설치)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에 사무과를 둔다.

②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사무과장) ①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 (전문위원) ①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 (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평창군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第80條 (懲戒의 종류 및 議決) ① 懲戒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公開會議에서의 警告
2. 公開會議에서의 謝過
3. 30日 이내의 출석정지
4. 除名

② 除名에는 在籍議員 3分의 2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第81條 (懲戒에 관한 會議規則) 懲戒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세워하고 전
요한 사항은 會議規則으로 정한다.

第12節 事務機構와 職員

第82條 (事務處등의 設置) ① 市·道 議會에는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條例로 정
하는 바에 의하여 事務處를 둘 수 있으며, 事務處에는 事務處長과 職員을 둔
다. <改正 91·12·31>

② 市·郡 및 自治區 議會에는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條例로 정하는 바에 의하
여 事務局 또는 事務課를 둘 수 있으며 事務局·事務課에는 事務局長 또는 事務
課長과 職員을 둘 수 있다. <改正 91·12·31>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務處長·事務局長·事務課長 및 職員(이하
이 節에서 "事務職員"이라 한다)은 地方公務員으로 補한다. <改正 91·12·31>

第83條 (事務職員의 定員과 任命) ① 地方議會에 두는 事務職員의 定數는 條例로
정한다.

② 事務職員은 地方議會의 議長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任命
한다. <改正 94·3·16>

第84條 (事務職員의 職務와 身分保障等) ① 事務處長·事務局長 또는 事務課長은
議長의 命을 받아 議會의 事務를 치관한다. <改正 91·12·31>

② 事務職員의 任用·報酬·服務·身分保障·懲戒등에 관하여는 이 法에 정한 것
을 세워하고는 地方公務員法를 適用한다.

第6章 執行機關

第1節 地方自治團體의 長

第1款 地位

(총 46)

“600년 전통위에 세계속의 강원도”

강 원 도

우 200-700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151 (0361)51-3320, 행정2224, 2295, 전송(0361)250-2495

자치행정과 과장 : 이방웅 담당 : 지방행정사무관 최순규 담당 : 이주익

[Redacted]

문서번호 자차 12200-1669

시행일자 1998.10.22.(1년)

경유

수신 받는곳 참조

참조

선 결	과장	이방웅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1998.10.23	결 재
처 리 당 자	번호 처 리 자	12464	공 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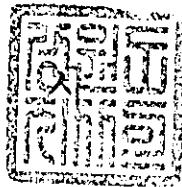
제목 조례·규칙모델 표준안 보완

1. 자차 12200-1464('98. 9.15)호와 관련 됩니다.
2. 상기호로 시달한 바 있는 조례·규칙모델 표준안에 대하여 일부 보완하여 복
임과 같이 통보하니 당초시안에 의해 조례·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보완
된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기구·정원관련 조례·규칙모델 표준(안) 1부(MOHKA망으로 송부) 등.

강 원 도 지

전결 자치지원국장 박수준



수신처 디